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 31 선고 2022가단1195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대리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우종진

변 론 종 결 2022. 12. 20.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C과 피고 사이에 2021. 8.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21. 8. 23. 접수 제431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 2)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1)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위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순 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상대처
1	E	765,000,000	2018. 4. 16.	2022. 4. 15.	일반자금대출	F 은행 용당지점

- 3)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E	765,000,000	F 은행 용당지점	2018. 4. 20.	900,000,000

나. 신용보증사고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2021. 12. 16.경 대출금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2. 3. 22. F은행에 원금 및 이자 합계 772,913,6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체결과 가등기 등

1) C은 2021. 8. 20.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송금 받고 피고에게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2) C은 같은 날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을 3억 원, 매매완결일을 2021. 11. 20.로 각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역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21. 8. 23. 접수 제43172호,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것은 없었고,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인 근저당권만 마쳐져 있었는데, 2022. 1. 이후 원고, H 주식회사, F 등의 가처분,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4, 6~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살핀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20361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2022. 3. 22.자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위 구상금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지목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그러한 이상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난 2021. 12. 16.에서야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여서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4개월 정도 이전인 2021. 4.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22. 4. 15.까지 연장해주기까지 하였다.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나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회사나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더라도 단순히 소극재산이 그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관한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판결 참조).

③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압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것이 없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5개월 가까이 지난 2022. 1. 이후에야 압류,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시작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왕현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남구 []동
 []아파트 []동
 [도로명 주소] 부산 남구 []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9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초: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호 174.107㎡

대지권의 표시

토지권의 표시: 부산 남구 []동 대 170612.4㎡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70612.4분의 77.7857

--- 이 상 ---

1) 보증기한은 당초 2019. 4. 15.이었는데, 2019. 4.경 2020. 4. 15.로, 2020. 4.경 2021. 4. 15.로, 2021. 4.경 2022. 4. 15.로 각 연장 변경되었다.